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사안전국 1개 정책관등, 1개 과 및 1개 센터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 중 1명(8등급 1명)은 외교부 정원 1명(7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0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1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경감 4명)은 증원하며, 긴급여권 발급 등 영사민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인공지능 관련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국민 공공외교 및 문화외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영사조력 및 영사서비스 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을 증원하며, 경찰 분야 주재관 인력 5명(경정 또는 경감 5명),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분야 주재관 인력 1명(4급 1명) 및 출입국 분야 주재관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관할구역의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중 23명(3등급 또는 4등급 23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원한 주재관 한시정원 10명(경감 2명, 경위 4명, 경사 4명)과 공관 관할구역의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9년 2월 28일까지로 각각 3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외교부에 증원하였던 정원 2명(3등급 또는 4등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외교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사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외교부에 증원하였던 정원 중 5명(3등급 또는 4등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령 제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영사안전국) ① 영사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사안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해외안전기획관으로 하며, 해외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해외안전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3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사안전국장을 보좌한다.

④ 영사안전국에 영사안전정책과·여권과·재외국민보호과·해외위난대응과·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안전콜센터를 둔다.

⑤ 여권과장 및 재외국민보호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영사안전정책과장·해외위난대응과장·해외안전상황실장 및 영사안전콜센터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⑥ 영사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사 관련 법령·정책·지침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영사 관련 협정 체결 및 소관 협정 관리
3.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4. 재외동포청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재외동포는 제외한다)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6. 국외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7.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8. 국내 체류 외국인의 영사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실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여권 관계 법령·제도의 수립·총괄 및 조정
3. 일반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에 관한 사항
4. 재외국민의 여권에 관한 사항
5. 여권기록의 보존·관리
6. 전자여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여권에 관한 사항

⑧ 재외국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 사건·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총괄·조정
- 1의2. 재외국민보호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의 수립·시행 및 총괄·

조정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내 관계부처 협조 및 국제협력 총괄·조정
3. 국외사건·사고 전례 분석 총괄·조정
4. 영사협력원의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외안전기획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실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해외위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재난,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해외위난 대응 업무의 총괄·조정
 2. 여행경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3.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4. 국외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해외안전여행 플랫폼 관리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조정
- ⑩ 해외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위난 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 모니터링
2. 국외사건·사고의 접수·전파, 상황판단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해외위난 상황과 관련한 신속대응팀의 유지, 관리, 교육, 파견 및 모의훈련

4. 국외 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7. 당직업무 관리

⑪ 영사안전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 우리 국민 사건·사고의 접수
2. 본부 및 관할 공관에 접수 내용 신속 전파
3.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신속해외송금 및 유실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영사 업무 일반 상담에 관한 사항
6. 상담근로자 인사관리·보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34조제1항 단서 중 “10명”을 “9명”으로, “8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명)”을 “(2명)” 및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2026년 2월 28일”을 “2029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935”를 “962”로, 일반직 계 “227”을 “228”로,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5”를 “16”으로, 외무공무원 계 “700”을 “722”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43”을 “44”로, 8등급 외무공무원 “66”을 “68”로, 7등급 외무공무원 “19”를 “18”

로,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57”을 “173”으로,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29”를 “33”으로 하고,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9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4”를 신설하며, 경찰공무원 계 4 다음에 “경감 4”를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945”를 “971”로, 일반직 계 “227”을 “228”로,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6”을 “17”로, 외무공무원 계 “710”을 “731”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43”을 “44”로, 8등급 외무공무원 “66”을 “68”로, 7등급 외무공무원 “19”를 “18”로,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57”을 “173”으로,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37”을 “40”으로 하고,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9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4”를 신설하며, 경찰공무원 계 4 다음에 “경감 4”를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외무공무원 계 “1,506”을 각각 “1,510”으로, 5등급·6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24”를 “25”로,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43”을 “46”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제39조제3항, 별표1의2의 개정규정 중 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부분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을 말한다.

1.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라이베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시에라리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외교부령 제110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시행으로 증원된 별표 1의2의 정원 2명(3등급 또는 4등급 2명)은 2027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외교부령 제13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시행으로 증원된 별표 1의2의 정원 6명(3

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6명) 중 5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별표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8조 관련)

1. 외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개발협력국 개발전략 · 민간협력과	5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 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나.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	0명	2027년 9월 30일까지
다. 개발협력정책관	0명	2027년 3월 31일까지
라. 영사안전국 해외안전 기획관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마. 영사안전국 해외위난 대응과	1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 등급 5명, 3등급 또는 4등 급 3명, 경감 2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바. 영사안전국 영사안전 콜센터	4명 (5등급 또는 6등급 4명)	2028년 9월 30일까지

2. 외교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대 한민국재외공관)	7명 (3등급 또는 4등급 7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

대한민국재외공관 한시정원표(제39조 관련)

제39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9년 2월 28일)

총계	1
외무공무원 계	1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영사안전국) ① 영사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0조의2(영사안전국) ① 영사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영사안전국에 영사안전정책과 · 재외국민보호과 · 해외안전상황실 및 여권과를 둔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사안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해외안전기획관으로 하며, 해외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영사안전정책과장 및 여권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재외국민보호과장 및 해외안전상황실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③ 해외안전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3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사안전국장을 보좌한다.
④ 영사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영사안전국에 영사안전정책과 · 여권과 · 재외국민보호과 · 해외위난대응과 ·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안전콜센터를 둔다.
1. 영사 관련 법령 · 정책 · 지침의 수립 · 총괄 및 조정	⑤ 여권과장 및 재외국민보호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2. 영사 관련 협정 체결 및 소관 협정 관리	
3.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4. 재외동포청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재외동포는 제외한다)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6. 삭제

7. 국외사건 ·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8.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국내 체류 외국인의 영사 보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재외국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사건 · 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보호 업무

1의2. 재외국민보호 정책 · 제도에 관한 사항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내 관계부처 협조 및 국제협력

3. 국외사건 · 사고 사례 분석

4. 영사협력원의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6. 여행정보제도 운영에 관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영사안전정책과장 · 해외위난대응과장 · 해외안전상황실장 및 영사안전콜센터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⑥ 영사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사 관련 법령 · 정책 · 지침의 수립 · 총괄 및 조정

2. 영사 관련 협정 체결 및 소관 협정 관리

3.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4. 재외동포청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재외동포는 제외한다)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6. 국외사건 ·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7.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8. 국내 체류 외국인의 영사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 실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사항

7.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8. 국외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홈페이지 등 관리

⑥ 해외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 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 모니터링

2. 국외사건·사고의 접수·전파, 상황판단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국외 위난상황과 관련한 신속대응팀의 유지, 관리, 교육, 파견 및 모의훈련

4. 국외 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영사콜센터의 운영

7. 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8. 당직업무 관리

⑦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 정책의 수립·시행 및

⑦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여권 관계 법령·제도의 수립·총괄 및 조정

3. 일반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에 관한 사항

4. 재외국민의 여권에 관한 사항

5. 여권기록의 보존·관리

6. 전자여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여권에 관한 사항

⑧ 재외국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 사건·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총괄·조정

1의2. 재외국민보호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내 관계부처 협조 및 국제협력 총괄·조정

3. 국외사건·사고 전례 분석

총괄·조정

2. 여권 관계 법령·제도의 수립·총괄 및 조정

3. 일반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에 관한 사항

4. 재외국민의 여권에 관한 사항

5. 여권기록의 보존·관리

6. 전자여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여권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4. 영사협력원의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외안전기획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실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해외위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재난,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해외위난 대응 업무의 총괄·조정

2. 여행경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3.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4. 국외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해외안전여행 플랫폼 관리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조정

⑩ 해외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해외위난 상황 등 각종 사건
· 사고 모니터링

2. 국외사건·사고의 접수·전
파, 상황판단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해외위난 상황과 관련한 신
속대응팀의 유지, 관리, 교육,
파견 및 모의훈련

4. 국외 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및 장
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7. 당직업무 관리

⑪ 영사안전콜센터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해외 우리 국민 사건·사고
의 접수

2. 본부 및 관할 공관에 접수 내
용 신속 전파

3.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신속해외송금 및 유실물 관
리에 관한 사항

5. 영사 업무 일반 상담에 관한

사항

6. 상담근로자 인사관리·보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34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10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생략)

③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정

제34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9명 -----
----- 7명 -----
-----.

② (현행과 같음)

③ -----

보보호·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 2명) 및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
제39조(한시정원) ① (생략) ② 공관의 관할구역의 사건·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③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제39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2029년 2월 28일----- -----. <삭제>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935</u>	<u>962</u>	+27
·	·	·	
·	·	·	
일반직 계	<u>227</u>	<u>228</u>	+1
·	·	·	
·	·	·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u>15</u>	<u>16</u>	+1
·	·	·	
·	·	·	
외무공무원 계	<u>700</u>	<u>722</u>	+22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u>43</u>	<u>44</u>	+1
·	·	·	
·	·	·	
8등급 외무공무원	<u>66</u>	<u>68</u>	+2

·	·	·	
·	·	·	
7등급 외무공무원	<u>19</u>	<u>18</u>	-1
·	·	·	
·	·	·	
5 등급 · 6 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u>157</u>	<u>173</u>	+16
·	·	·	
·	·	·	
3 등급 · 4 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u>29</u>	<u>33</u>	+4
·	·	·	
·	·	·	
경찰공무원 계	<신 설>	<u>4</u>	+4
경감	<신 설>	<u>4</u>	+4

[별표 1의2]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45</u>	<u>971</u>	+26
·	·	·	
·	·	·	
일반직 계	<u>227</u>	<u>228</u>	+1
·	·	·	
·	·	·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u>16</u>	<u>17</u>	+1
·	·	·	
·	·	·	
외무공무원 계	<u>710</u>	<u>731</u>	+21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u>43</u>	<u>44</u>	+1
·	·	·	
·	·	·	
8등급 외무공무원	<u>66</u>	<u>68</u>	+2
·	·	·	

·	·	·	
7등급 외무공무원	<u>19</u>	<u>18</u>	-1
·	·	·	
·	·	·	
5 등 급 · 6 등 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u>157</u>	<u>173</u>	+16
·	·	·	
·	·	·	
3 등 급 · 4 등 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u>37</u>	<u>40</u>	+3
·	·	·	
·	·	·	
경찰공무원 계	<u><신 설></u>	<u>4</u>	+4
경감	<u><신 설></u>	<u>4</u>	+4

[별표 3]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506</u>	<u>1,510</u>	+4
외무공무원 계	<u>1,506</u>	<u>1,510</u>	+4
·	·	·	
·	·	·	
5등급·6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u>24</u>	<u>25</u>	+1
·	·	·	
·	·	·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u>43</u>	<u>46</u>	+3
·	·	·	